

“2010.1.6(수) 오후 1시 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0. 1. 6 배포
- ▶ 총 2 쪽 (붙임별도)

## **보도자료**

- ▶ 고용정책과장 나영돈
- ▶ 고용정책과 사무관 배영일
- TEL : 2110-7161
- E-MAIL : yib1974@molab.go.kr
- FAX : 502-6855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법정부적 국가고용전략 수립키로**

-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경제·산업·재정·교육·복지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보완

- 노동부는 1.6(수) 11:00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는 금년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법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하면서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 그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 ※ 고용영향평가는 2010.1.1부터 개정·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중에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붙임 1.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2.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계획(안)
3. '10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안
4.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안)

##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12조

□ 기능 및 역할 : 고용정책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 인력수급동향,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역별 고용촉진, 고용서비스 제공 등 시책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고용 및 실업대책, 고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의 설정,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등

□ 구성 : 위원장 포함 24인

- 위원장(노동부장관) 1명,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8명
- 근로자·사업주대표, 고용문제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추후 위촉 예정)
  - ※ 정부위원회 구성 정책목표(행안부)에 의거 위촉위원 16명 중 여성계 5명, 지방인재 5명, 시민단체 출신 5명 포함('08.6월 기준, 중복 가능)

□ 위촉권자 : 노동부 장관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촉방법 및 절차 (법령상 별도 규정 없음)

- 위원 후보자의 개별 동의 → 노동부장관 위촉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현황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원장	노동부	장관	임태희
2	근로자 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의현
4	사업주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상열
5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재희
6	고용 관련 전문가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박성희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8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대봉
10		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희선
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유길상
12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준성
13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규
14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15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16		동국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성혜
17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허경욱
18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19		행정안전부	제2차관	강병규
20		지식경제부	제1차관	임채민
21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유영학
22		국토해양부	제1차관	권도엽
23		여성부	차관	황준기
24		중소기업청	청장	홍석우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

2010. 1. 6 (수)

제1호 안건 (토의안건)

##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계획(안)

2010. 1. 6

노동부

# 《 목 차 》

<b>I. 국가고용전략의 의의 및 필요성</b> .....	<b>1</b>
1. 의의 .....	1
2. 필요성 .....	1
<b>II.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b> .....	<b>2</b>
1. 활력없는 노동시장 .....	2
2. 고용문제의 주요 원인 .....	3
<b>III. 국가고용전략의 주요과제</b> .....	<b>5</b>
1. 기본방향 .....	5
2. 주요 검토과제 .....	6
<b>IV. 향후 추진계획</b> .....	<b>7</b>
1. 추진체계 .....	7
2. 추진일정 .....	7
<붙임>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안) .....	8
<참고1> EU의 고용전략 .....	9
<참고2> OECD의 신고용전략 .....	11
<참고3> '09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연구·논의사항 .....	13

# I. 국가고용전략의 의의 및 필요성

## 1. 의 의

- (의미) 고용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지표(Indicator)
- (구성) 중장기 관점의 기본원칙 및 전략적 목표, 목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정책수행체계 및 절차 등의 조합
- (범위)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일(working)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정책영역을 포괄
- (역할)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용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전략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

## 2. 필요성

- 고용은 국민에게는 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에는 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 외환위기 후 잠재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급속히 약화
  - 고용 위축 → 소비 위축 →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제 및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가운데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공급 위축, 생산성 정체 및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켜 경제의 성장동력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
-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고용회복의 속도나 강도가 약해지고,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고용정책이 절실
- 노동시장의 활력을 회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고용전략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EU는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을 통하여 노동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제고 ['07년까지 고용률 3.2%p(여성 4.6%p, 고령자 7.8%p) 상승]

## II.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

### 1. 활력없는 노동시장

#### □ 잠재성장률 하락과 노동투입의 둔화

- 외환위기 이후 투자 위축과 더불어 고용위축·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린 노동투입의 둔화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초래
  - ▲ 잠재성장률(KDI) : 8.6%('80년대)→6.3%('90년대)→4%중반('00년대)
- 특히,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분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고령화의 진전으로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
  - ▲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삼성경제연구소) : 1.4('80년대)→0.9('90~'97)→0.2('98~'07)→0.0('08~'09)

#### □ 고용창출력 둔화와 낮은 고용률

-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동일 성장하에서의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도 낮아지는 저고용형 성장구조
  - ▲ 고용탄성치 국가비교('95~'06) : EU15국 0.599, 미국 0.629, 영국 0.290, 일본 0.310, 한국 0.214
-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낮은 상태에서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낮은 고용률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
  - ▲ '08년 고용률(15~64세)은 63.8%로 OECD 평균(66.5%)보다 2.7%p 낮으며, 그중 선진 15개국과 대비해서는 10%p 정도 낮은 수준

#### □ 일자리의 질 저하

-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 근로자(300인이상)의 비중은 감소('93 21.0% → '07 12.7%)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09.8월 33.9%)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근로빈곤층을 양산
  - ▲ 임금 10분위수 배율(1분위와 2분위의 경계값 임금 대비 9분위와 10분위의 경계값 임금의 비율) : 3.64('95) → 4.74('07)
  - ▲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미만) 비율 : 22.9%('95) → 25.6%('07)
  - ▲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원수 비율) : 9.0%('96) → 16.7%('06)

## 2. 고용문제의 주요 원인

### 노동수요 측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경제·산업구조

#### □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 내수보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26.2('95)→15.3('00)→10.8('05)→9.4('07)

- 고용구조 악화 등에 따른 가계소득의 위축은 취업유발계수가 큰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산업의 부진을 초래

▲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30.4('95)→21.4('00)→17.8('05)→17.1('07)

#### □ 일자리 창출형 투자 부진

- 전반적으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투자 부진이 투자의 고용창출력을 약화

▲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19.4('95)→15.0('00)→13.6('05)→13.1('07)

#### □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

- 제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능력이 큰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업종별 취업유발계수('07) : 제조업 9.2, 서비스업 18.1

#### □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

- 대기업의 임금, 근로형태 등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고용의 외부화를 통하여 그 비용을 중소기업체에 전가하는 구조

#### □ 중소기업의 과소 고용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과소 고용을 유인

□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 (여성) 나아지고는 있으나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구조(M커브)가 여전하며 및 노동시장 재진입도 어려운 상황
- (청년) 과잉 교육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고, 기능 수준별 미스매치도 상존

□ 미흡한 직업능력개발 투자

- 정규교육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재직자 훈련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
- 경력단절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훈련도 부족한 실정

□ 인력수급 미스매치

- 구직자 및 구직단념자는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산업·직업·지역간 원활하지 못한 인력이동 등 부문별 인력부족과 취업난 상존

□ 취약한 사회안전망

- 인력수급기능(고용서비스망)이 취약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이 아직도 미흡
- 특히,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 4대 취업 애로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안전망이 취약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킬 가능성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린 고령화로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폭될 우려

※ 핵심근로계층(25~49세)은 '09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 총인구는 '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 베이비붐 세대(45~54세)의 은퇴는 '10년에 시작하여 '18년 전후에 정점에 달할 전망

### Ⅲ. 고용전략의 주요과제

- ◇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회복시켜 고용률을 제고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과 고용탄성치 제고를 통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회복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 1. 기본방향

##### □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 경제·산업·교육·복지·재정·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집행시 고용인 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
-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분야(서비스산업 등)의 전략적 활성화,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조합 적극 모색
  - ※ 우리나라는 고용탄성치의 절대적 수준 뿐 아니라 선진국 대비 상대적 수준도 낮아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여력이 큼

##### □ 노동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인적자원개발시스템 혁신, 매칭기능 강화 등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붐 세대 등 4대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지원 강화
- 노동투입의 증가가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고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조합 발굴
  - ※ 고용은 경제성장에도 좌우되지만, 고용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EU '신고용전략', '03.11월)

## 2. 주요 검토과제

### □ 노동수요 측면

-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산업·교육·복지·재정·세제 등 주요 정책·제도·사업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평가·개편
- (투자 활성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조세·금융제도 개선
-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업·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일자리중개산업 등 육성 등
-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과도 또는 과소한 노동규제 정비, 고용친화적 임금교섭체계 구축, 임금·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 등 작업장 혁신 추진 등
- (공정거래관행 정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

### □ 노동공급 측면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상용형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교육 개혁) 전문계고 및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
- (능력개발투자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취약계층 맞춤형 훈련·산학연계형 훈련 확대, 인적자원개발시장 활성화 등
- (일자리중개시스템 효율화) 중앙-지방-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일자리 중개시스템 효율성 제고
- (사회안전망 확충)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 경력단절여성, 베이비 붐 세대 등
- (고령사회 대비)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 연장 공론화 추진 등

## IV. 향후 추진계획

### 1. 추진체계

#### □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운영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하여 전문적 검토 및 각계 의견을 수렴
- 준비팀 검토결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가고용전략(안) 마련

- 전략적 방향은 물론 세부실천계획(Action Plan)\*을 포괄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주기적(예: 2년)으로 수정·보완

\* 세부실천계획(Action Plan)은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연계

####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과 연계

- 상반기중 논의된 일자리 관련 정책은 국가고용전략에 반영
- ※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논의·합의된 사항도 포괄

-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국가고용전략(안)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 국가고용전략 확정·발표는 각계 각층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

### 2. 추진일정

#### □ 국가고용전략 초안 마련 : '10.5월말까지

-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10.1.6) 및 월 1회 이상 논의를 통하여 5월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 마련

#### □ 국가고용전략 확정 및 발표 : '10.6월말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붙임> 국가고용전략 준비팀 구성(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팀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백양현	중기협 인력지원본부장	
유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윤종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관섭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 <참고1> EU의 고용전략

□ EU는 2000년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고, 성장과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 ▲ 고용창출형 경제성장(Job-rich Growth)를 위해 ①경제성장률의 제고와 ②성장의 고용창출력(employment intensity of growth) 제고를 추진
- ▲ 2010년까지 고용률 70%, 여성고용률 60%, 고령자(55~64세) 고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 EU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2005-2008)**」

- ① **성장과 고용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1~6)**
  - 지속가능성장이 가능토록 건전재정확보 등 경제의 안정적 운영
  -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공지출 및 세제구조를 개혁
  - 임금과 노동비용에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교섭구조의 틀을 혁신
- ②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시경제정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7~16)**
  - 지식과 혁신 : 지속가능성장의 동력
    - R&D 투자확대, ICT 확산, 혁신형 기업, 산학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와 고용에 유리한 환경조성
    - 공정경쟁시장, 대외개방, 서비스산업의 역내통합,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및 육성, 창업 등 규제완화, 기업가정신의 고양 등
- ③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17~24)**
  - 보다 많은 사람의 고용 지원
    - 청년취업 → 일과 가정 양립, 성간격차축소 → 역동적 고령화 (active ageing) → 혁신된 사회적 보호 등 생애사이클을 토대로 고용지원
    - 일을 통한 복지(make work pay), 개인별 취업지원(IAP) 등 취업지원
    - 고용인프라 확충, 인력수급전망 등 노동시장의 매칭(matching) 기능 강화
  - 근로자와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증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감소
    - 고용친화적 임금교섭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 평생학습 및 근로시간 등 성인의 교육훈련 지원시스템 구축

□ 환경변화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적응력(adaptability)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EU는 최근 '유연·안정성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

- ① 기업 내부에서의 신속적 적응을 의미하는 **내부적 유연·안정성**과  
② 다른 회사로의 일자리 이동 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의  
원활한 이동을 의미하는 **외부적 유연·안정성**으로 개념 구분
- 4대 구성요소로 ① 유연하고 안정된(flexible and secure) 계약관계와  
작업조직, ② 효과적인 ALMPs, ③ 평생학습체제, ④ 현대적인  
사회안전망(적정한 소득보장과 취업촉진)을 제시
- 유연·안정성 증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
- 유연·안정성 강화 조치는 통상 금전적 비용증대를 수반하게 되나,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 등을 통한  
금전적 편익이 중장기적으로 비용보다 커지게 됨을 강조

◎ EU의 「노동시장 유형별 유연·안정성 경로(2007)」

- ①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노동시장
  - 비정규직을 노동법, 단체협약, 사회안전망, 평생학습 내로 편입시킴으  
로써 정규직과의 불균형을 해소
  -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유리하게 생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 ②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속에 근무하나 그 결과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평생학습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증대
  - 취업이 어려운 여성·청소년·고령자 등의 고용지원 강화
- ③ 노동시장은 역동적이나 많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있는 노동시장
  - 저기능 근로자들의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이들의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ALMPs와 사회안전망을 구축
- ④ 장기 실업급여·복지수당 수급자 또는 비공식고용이 많은 노동시장
  - 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인센티브를 부여하고 ALMPs를 강화
  - 유연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

□ 리스본 전략 이후 EU(27개국)의 고용률 변화상

- 전체 고용률 : 62.2%('00) → 65.4%('07), 3.2%p ↑
- 여성고용률 : 53.7%('00) → 58.3%('07), 4.6%p ↑
- 고령자고용률 : 36.9%('00) → 44.7%('07), 7.8%p ↑

## <참고2> OECD의 신고용전략

- OECD는 2006년 종전 고용전략(1994)을 재평가하여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고용전략』 발표

### ◎ OECD 신고용전략(2006년)의 권고 : 4대 전략과제 20개 정책권고

- ① 전략과제 A :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 A-1. 물가안정 및 건전한 공공재정 확보
  - A-2. 경제안정화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 ② 전략과제 B : 노동시장 참여 및 구직활동에의 장애요인 제거
  - B-1. 실업급여는 Activation과 연계하여 설계
  - B-2. 고용지원서비스에의 참여의무화 및 PES의 역량 강화
  - B-3. PES의 성과는 장기적인 영향을 토대로 평가
  - B-4. 기타 사회급여도 취업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
  - B-5. 연금 기타 사회복지 시스템은 조기퇴직 인센티브가 없도록 개혁
  - B-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B-7. "일을 통한 소득(MWP)"을 위한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 도입 등
- ③ 전략과제 C :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에서의 노동수요 저해요인 해소
  - C-1. 최저임금은 일자리창출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
  - C-2.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수준을 경감
  - C-3. 임금협약의 사업장 단위 탄력성 증대
  - C-4. 기업의 진입장벽 및 창업규제 완화
  - C-5.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사업운영 감소
  - C-6.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의 촉진
  - C-7. 불공정 해고는 제한하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은 완화
  - C-8.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제의 균형 유지
  - C-9. 노동법 및 사업등록법 개혁 등을 통한 비공식 노동의 축소
- ④ 전략과제 D : 노동력의 기능수준 및 경쟁력의 향상촉진
  - D-1.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촉진
  - D-2. 산학연계 등을 통해 학교로부터의 직장으로의 이행을 지원

□ OECD는 좋은 고용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policy-mix)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좋은 고용성과를 나타낸 국가들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A유형**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 낮은 조세부담 및 실업급여, 중간이하 수준의 ALMPs 지출을 결합한 **시장의존적(market-reliant)** 유형
  - 낮은 수준의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을 특징
- **B유형**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을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
  - 중간 수준의 고용보호법제,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높은 수준의 ALMPs 지출과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결합한 국가로서
  - 강력한 사회적 대화와 중앙집권적 또는 중앙에서 조정되는 노사관계가 특징

□ 위의 두 유형 모두 경제성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그러나 A 유형은 소득불평등 및 빈곤률이 높고, B 유형은 높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

< A유형 국가군과 B유형 국가군의 비교 >

	A유형	B유형	OECD 평균	한국	
고용보호법규(EPL)의 엄격성	1.38	2.13	2.01	2.00	
실업급여의 관대성	18.23	39.86	27.81	10.00	소득대체율 계량평가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LMPs)	0.37	1.07	0.64	0.13	GDP 대비 ALMPs 비율
	15.76	64.14	29.25	-	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ALMPs 비율
노동조합 조직률	21.38	50.83	33.70	10.3	
단체협약 적용률	30.75	83.33	59.96	-	
단체교섭의 중앙조정(coordination) 정도	1.88	3.92	2.88	1.00	
생산물 시장 규제 정도	1.20	1.28	1.42	1.52	
고용률	70.92	71.91	66.1	63.8	
GDP 대비 노동시장프로그램 예산비율	0.98	2.68	1.86	0.35	
소득 불평등도 (Gini 계수)	0.315	0.256	0.294	0.344	
상대 빈곤률	11.78	7.77	9.64	16.5	중위소득의 50%미만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및 각년도

### <참고3> '09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연구·논의사항

####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

-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 (이종훈, 명지대)

#### □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거시·금융·국제무역 (강석훈, 성신여대)
  - 국민계정 변수들과 취업자증가율의 상관관계
- 재정정책
  - 일자리중심의 재정정책 기초 (안종범, 성균관대)
  - 세제개편·성과분석체계 (이영, 한양대)
- 산업정책
  - 산업구조 (정진화, 서울대)
  - 산업조직 (최강식, 연세대)
- 교육 및 인적자본 개발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 노사관계
  - 노동시장법·개별적 근로관계법 (김재훈, 한림대)
- 고용·복지
  - 고용보호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유경준, KDI)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 일자리 관련 사업 평가체계 (최강식, 연세대)

####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안 (이종훈/허재준)

# **‘10년 고용전망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안**

**2010. 1. 6.**

**노 동 부**

# 목 차

I. 최근 고용동향 및 '10년도 전망 .....	1
II. '09년도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	3
III. '10년도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방안 .....	6
IV. '10년도 노동부 일자리대책 추진방안 .....	10
<붙임> 노동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11월말 현재) .....	18

1 최근 고용동향

□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11월 10천명 감소로 전환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 3천명(8월)→ 7천명(9월)→ 10천명(10월)→ -10천명(11월)

○ 취업자수 증감 하락은 동절기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에서 기인(-151천명)

○ 상용직 취업자 수는 492천명(5.4%) 증가하여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307천명(-5.1%)으로 감소 지속

- 임시직은 186천명(3.7%) 증가하고, 일용(-264천명) 및 무급가족종사자(-117천명) 감소폭은 확대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취업자 증감은 -328천명으로 전월(-322천명)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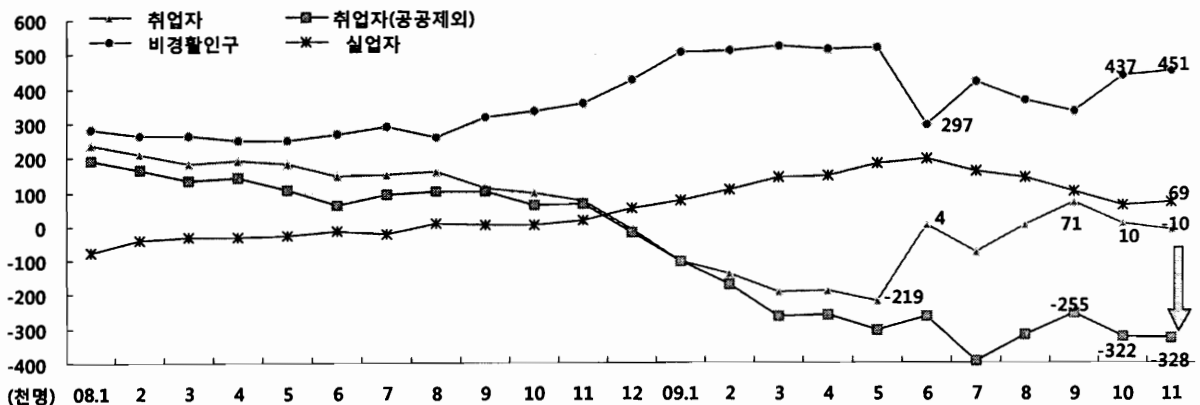
□ 실업자 수는 819천명(69천명 증가), 실업률 3.3%(0.2%p 상승)

※ 실업자 증감(천명) : 73(1) → 142(3) → 196(6) → 141(8)→ 103(9) → 69(11)

○ 비경황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폭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

※ 비경황 증감(천명) : 506(1) → 525(3) → 297(6) → 366(8) → 335(9) → 45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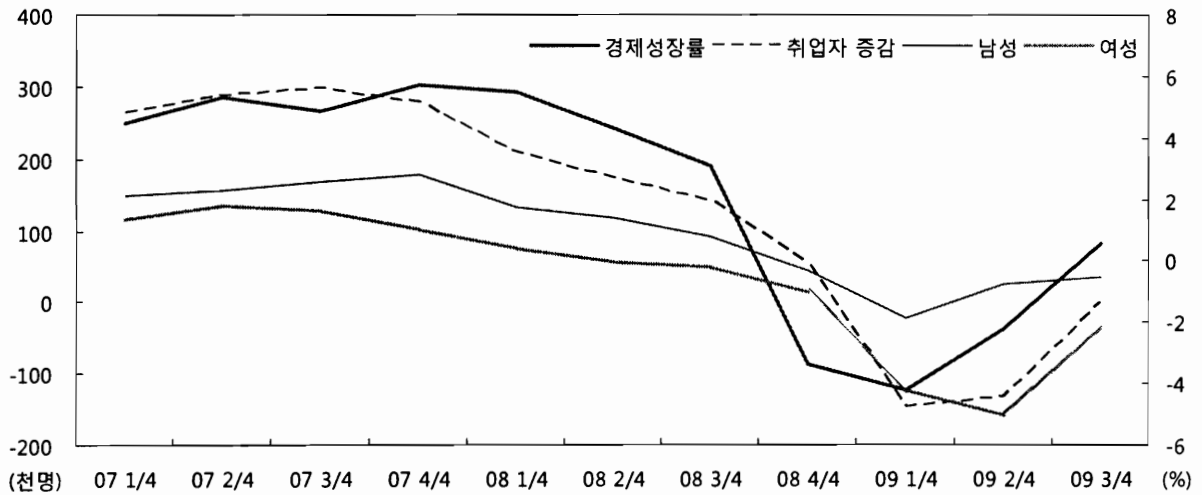
< 주요 동향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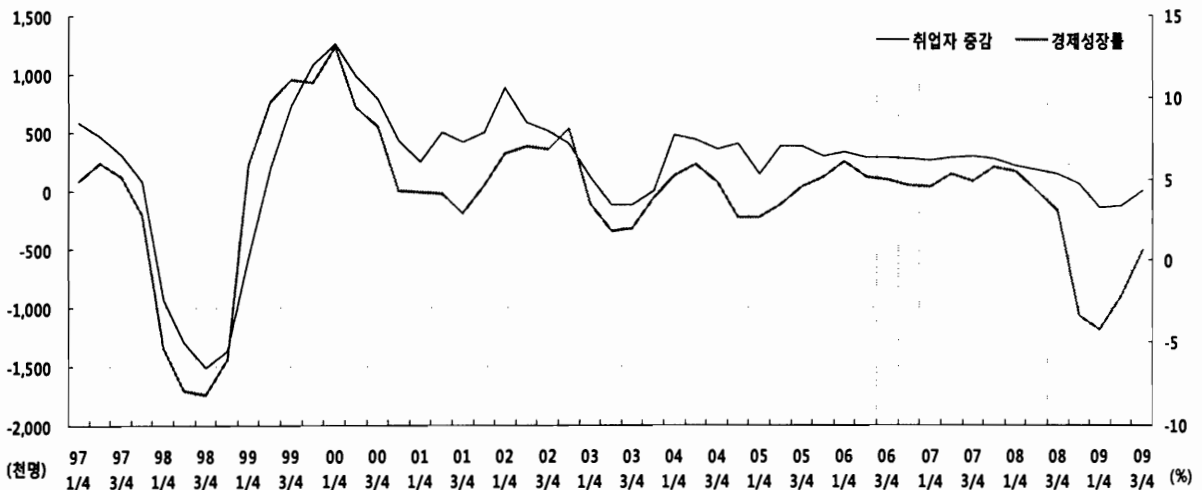
## 2 '10년도 고용전망

- 4% 이상의 경제성장에서 경기회복기의 적절한 출구전략 등을 통해 10만 후반 내지 20만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08년 이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창출력은 하락세를 보여 '10년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취업자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근 취업계수는 점차 하락하여 1%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5.5~8.0만 수준

< 경제성장률 및 성별 취업자 증감 ('07.1q~'09.3q) >



<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증감 추이 >



## 1 추진경과

- 추경예산안의 조기 편성,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 등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대책 중점 추진
  - 임금을 절감하여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대기업·공공부문부터 점차 확산
  - 청년·실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실업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
    - \*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1.29 노동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3.19 총리실) 보고
- 범정부적 고용위기 극복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대책 체계적 관리
  - 총리실에 「고용대책 TF」 운영('08.12~),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사업 개선·보완 추진
    - \*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 매주 회의 개최(총 38회)
  -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분류(26개 부처청 227개 사업)하여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실적 및 중복수혜 등 관리
  - 정부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일자리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 평가·점검 실시
    - 노동연구원에 「일자리대책평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종합 평가('09.6~12월)
    - 총리실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창업, 희망근로사업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개선·보완 추진

## 2 추진현황

- ◇ 11월말 현재 직접 일자리는 계획 81만명(5조원) 대비 90%인 73만명 채용
  -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는 계획 인원 572만명(16조원) 대비 102%인 586만명 지원

### □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 (청년인턴)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9만명 채용
  - 다양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취업역량 강화
    - \* 행정인턴 퇴직자 4,335명중 2,806명이 취업('09.9), 중앙부처 취업퇴직자의 68%가 인턴경험이 취업에 도움되었다고 답변
- (사회서비스) 아이·노인돌보미, 방과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18만명 지원
  -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창업 지원 등 사회적 기업 육성(250개) 활성화
    - \* 사회적기업 취업자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중 55.3%('09.9)
- (희망근로 등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만개의 일자리 제공
  - 특히 희망근로의 경우 집행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평가를 통해 대상자 자격심사 강화, 생산적인 사업 발굴 등 보완
- (취약계층 배려 강화)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시 실직가장 등에게 가점부여, 할당제 적용 등 취약계층 우선선발 기준 마련
  -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 74개 사업 대상으로 선발기준 마련·시행

### □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및 고용유지 지원

- (일자리 나누기)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중 1,998개소(29.5%)에서 일자리 나누기 참여
  -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임금반납액의 50% 손금산정 및 소득공제)

-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09.3)
- 범정부적으로 「위기극복지원단」(노동부)을 운영(3.13)하여 양보고섭 확산 등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지원
  - 노사화합선언은 3,364건으로 전년동기(1,761건) 대비 1.9배 증가
-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조정 우려가 있는 근로자 29만명 지원

#### □ 고용촉진·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 (고용촉진) 취약계층 19만명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전직 지원
  - 빈 일자리 실태조사(1·4월) 및 관련DB 구축, 상담직원의 구직자 동행면접 지원(12월 말 현재 빈 일자리 취업 34,486명)
    - \* 81개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09년도 67만명(잠정) 취업('08년 연간 54만명)
- (능력개발) 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등 양성 지원(310만명)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사업 통·폐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단계적 확대 실시('10년 실업자 훈련의 70%까지)
    - \* 31→14개로 통합 및 부처간 사업 조정으로 234억원 절감 효과('10)
- (창업지원) 1만명에게 창업자금을 대부하고, 3천명에 대해 창업 컨설팅 등 창업촉진 지원
  - 창업강좌 개설(총 80강좌) 및 창업 특강 개최(700회), 창업관련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창업 붐 조성

#### □ 실업급여 제도 확충 및 생계지원

- (실업급여) 139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특별연장급여 발동요건 정비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생계지원) 실직자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13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대부

1 일자리대책 개관

□ ‘10년도 정부 전체 일자리대책 예산은 약 12조원 규모(잠정)

○ 내년은 경제성장률이 5%내외로 전망되어 ‘09년도 추경예산(16조원) 보다 적게 편성(‘09년 본예산 11조원보다는 다소 증액 편성)

○ 이 중 노동부 일자리대책 예산은 5.7조원으로 약 48% 차지

- 주로 고용유지, 능력개발, 취업지원, 실직지원 사업 등에 편성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 조정 및 고용지원사업 효율화

○ 고용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확대 기조가 유지되도록 상반기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집중 시행(60%)

\* 희망근로 : ‘09년 25만명 → ‘10년 10만명(상반기), 청년인턴 : ‘09년 10만명 → ‘10년 5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 ‘09년 17만명 → ‘10년 14만명

○ ‘09년 대폭 확대된 고용유지 지원을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추경의 1/2 수준(11만명) 유지하고,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

< ‘10년도 일자리대책 규모(잠정)>

(단위 : 억원, 천명, %)

	정부 전체		정부(노동부 제외)	노동부
	예산	인원	예산(비중)	예산(비중)
총 계	119,465	4,746	61,926(51.8)	57,379(48.2)
○ 직접일자리창출	39,854	564	36,539(91.7)	3,315(8.3)
- 청년인턴	11,356	48	10,098(88.9)	1,258(11.1)
- 사회서비스	12,711	140	10,694(84.1)	2,017(15.9)
- 한시적일자리	15,787	376	15,747(99.7)	40(0.3)
(희망근로)	4,456	100	4,456(100.0)	-
○ 고용유지	1,123	113	-	1,123(100.0)
○ 능력개발·취업지원·창업지원	39,919	2,788	25,547(64.0)	14,372(36.0)
- 능력개발	12,648	2,595	2,614(20.7)	10,034(79.3)
- 취업지원	4,248	183	-	4,248(100.0)
- 창업지원	23,023	10	22,933(99.6)	90(0.4)
○ 실직지원	38,569	1,281	-	38,569(100.0)
- 실업급여	35,222	1,200	-	35,222(100.0)
- 생계보조	3,347	81	-	3,347(100.0)

□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

○ 단기적으로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일자리를 지속 추진

- 내년 상반기까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09년 예산보다 확대

\* 29만명('08) → 42만명('09 상반기) → 65만명('10 상반기)

-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인력수요가 높은 유망산업 분야 직업 훈련 확대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투자 환경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2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방안

◇ 내년도에도 확대 기조가 유지되도록 상반기에 물량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집행(상반기 60%, 하반기 40%)

\* 취업자 8만명 증가, 고용률 0.2%p 상승 효과 기대

□ 직접 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10만명)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발

\* 희망근로 프로젝트(만명) : 25('09추경) → 10('10예산안)

○ 청년인턴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축소하되,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상반기에 집중하여 운영('09년 추경 10만명 → '10년 5만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요에 따라 일자리 규모를 적절히 조정('09년 추경 17만명 → '10년 14만명)

□ 고용지원서비스 효율화

○ '09년에 대폭 확대되었던 고용유지 지원은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추경의 1/2 수준(11만명)으로 유지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을 금융위기 이전인 '08년 수준으로 환원

- 실업급여는 고용지표의 후행성을 감안, '09년 본예산 대비 확대(3.4조)
-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은 확대

### **3 고용창출 기반 마련**

#### 가. 고용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

##### □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수립(~'10년 상반기)

-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와 활력 회복,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고용창출력 확충
-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취약계층 취업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활용 전략 마련
- 부처별로 산업·경제 정책 추진시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고용 친화적으로 정책 설계·추진('09.10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 □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가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수립('10년초)
  - 관련 연구기관 합동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09.12)

##### □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대책

- 실업자와 취업애로층 확대, 고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 대책 마련('09.12)
  -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직업교육 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근원적 대안 검토
- 정년퇴직자 재취업, 기업의 전직지원센터 설립, 퇴직전문인력 해외취업 지원 등 「50 이후 세대 일자리 대책」 추진

## 나. 투자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 확충

◇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

□ 내년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와 예산배정을 연내 완료하여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 추진

○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신속한 투자를 유도

\* 11월 중 「공기업 투자보고대회」 개최 추진

□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설비투자 펀드('09.7월 민관합동회의시 보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 산은·기은이 2조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은·기은에 전담 Desk를 설치하여 지원중

\* 지원실적('09.10 현재) : (산은)3,200억원, (기은)1,069억원

○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

\* '10년중 집행계획(보상비제외) : 4대강 6.7조원, 보금자리 2.4조원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 교육·의료·관광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 중소기업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여 창업의욕을 고취(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구축, 창업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 1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근무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행 지원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졸 미취업자 등 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재 양성,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 지원
  - 글로벌 경제위기로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해외취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  
→ **목표 현실화 및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09.10.28 정부지원협의회)
- \* 대학·지자체 연계 해외취업사업, 해외구인처 발굴 민간위탁사업, 저소득층 취약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등
- (취업지원기능확충, 직장체험 등)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을 위해 학교별 「취업지원관」 채용 지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운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기간 단축

### 【'10년 추진과제】 청년고용 촉진 강화

-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①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량 중소기업 6만개 DB를 확충하고 매칭서비스 제공
  - ②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형훈련을 통한 취업연계(재학생 58천명, 졸업생 79천명)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 대한 창직·창업 지원
  - 취업인턴제와 훈련프로그램을 융합 지원(인건비, 훈련비)하고, 문광부·중기청 사업과 연계하여 창직·창업 지원
- 월·하청 기업간 노·사 상생협력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가 청년인턴을 연계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 확산 유도
-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실시, 훈련 등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 채용

## 2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1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여 성

- **(단시간 근로 확산)** 단시간 근로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50개소) 및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신규 고용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 신규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지원한도 40만원(시범실시)
- **(육아기 여성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 확대(응차지원 5억→7억, 시설전환비 1~2억→2~5억), 취사부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40인 이상→전체)('10.1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채용시 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등을 통한 여성의 고용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72개소 운영)하여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0년 추진과제】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 단시간·재택근무 적합직무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민간부문에 전파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 확대, 공공부문에서 보육수요가 높은 기관에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 \* 보육아동 정원 일부를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 추진

#### 고령자

- **(고용연장 지원)** 정년연장장려금 등 기업의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 (현행)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 (개선) 정년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 **(취업촉진)**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견 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개선
  - 고령자 인재은행 기능 확충, 맞춤형훈련과 현장연수를 연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내실화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확대 적용('09년 모집·채용 → '10년 임금·교육·훈련·해고)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Age Campaign 등 교육·홍보 강화

**【'10년 추진과제】 베이비붐 세대 고용 지원**

- 고용연장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 도모,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 시작
- 전직 지원 : 고령자 인재은행 확대 개편('09년 8개 → '10년 16개), 퇴직 전문인력 DB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집중 매칭

**장애인**

- (취업 촉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공공기관 : 2%→3%, 민간기업 : 2%→'14년까지 2.7%) 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장애인 고용률 2배 인정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 촉진
  - \*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등 의무 이행지도 강화
- (사업주 지원) 대기업 1사 1자회사 운동·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제도 도입 등 다수고용모델을 확산하고, 고용관리 진단서비스 등 사업주 친화적 서비스 도입
- (공공부문 고용확대) 정부기관의 경우 '12년까지 의무고용률 3%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발표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 이행실적 반영, 적합직종 발굴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

**【'10년 추진과제】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충 :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대기업 「1사 1자회사 운동」 추진 등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확산
-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장려금 지급기준 개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②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 (취업성공 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등 지급(2만명)
  - ▶ 취업지원 : 최장 1년 기간내에서 진단·경로 설정(1단계, IAP 수립)→ 의욕·능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 제공
- (디딤돌 일자리) 일정기간동안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

**【'10년 추진과제】 근로빈곤층에 대한 1:1 취업맞춤서비스 제공**

- 취업주치의 지정 : 저임금(150만원 미만) 실직 근로자에 대해 취업할 때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제도전 기회 부여 :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허용 ('10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③ 사회적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일자리 창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10,795명)
  - \* 신규공모는 재정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검토
  - 향후 성장가능성 높은 전략분야\* 발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
    - \* 지역개발, 산림, 문화예술, 로컬푸드 분야 등
-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세제지원, 민간의 참여와 협력 유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 (가칭)사회적기업원(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재정지원을 위한 소셜 펀드 조성 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구축
  - 대기업·전문가 집단의 사회공헌(Pro bono) 유도, 소셜벤처 대회를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추진

**④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여성가장, 출산여성, 청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 \* 장려금 지원수준 20%(15~60만원 → 18~72만원) 인상('09.5.14)

**【'10년 추진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여성가장,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배분
- 총 참여기간 및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종료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지역별 자원봉사 센터, NGO 등과 연계하여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디딤돌 일자리 확대

### **3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다만,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지원수준 등을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환원 조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중)
  - \* 중소기업 임금의 3/4→2/3(대기업 2/3→1/2), 고용유지훈련 요건(총 1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4 실업자·구직자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

- (빈일자리 고용알선 대책) 빈일자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DB를 구축,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 활성화)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근로자 집중 지원
-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실업자훈련의 70%, 2천억)를 정착시키고, 청년실업자·새터민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 확대 실시
-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실직자의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유도(3조 3,660억원), 개별연장급여 지급관련 재산 등 요건 완화 등
- (생계비 대부)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생계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생계비 대부

## 5 고용창출 기반 마련

- (고용서비스 확충) 공공-민간 및 중앙-지자체,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연계와 역할 정립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자체-민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가운데, 심층상담을 토대로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 민간위탁 확대 및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등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09.5월, 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

### 【'10년 추진과제】 민간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 규제 완화 : 직업소개 및 파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 일자리 중개 선도기업 육성 : 민간 일자리 서비스산업 대폭 정비 및 서비스 공신력 제고, 표준화·대형화 유도

-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훈련참여자의 선택권 강화, 산업계 참여 확대 및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훈련 활성화, 현장중심 훈련 촉진 등('09.5월,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광범위한 유희인력과 중소기업 구인난 상존, 청년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가능성
  - 녹색성장 등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인력수급전망 체계 구축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09.11월,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 보고, '09.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보고 )

### 【'10년 추진과제】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 국가고용전략 추진 :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10년 상반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월1회)
- 일자리대책 정비 : 범정부 일자리 사업(234개) 평가 및 개편
- 고용영향평가 : 국가·지자체 주요사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 지자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지역고용대책을 공표, 지역단위로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일자리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재편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지역고용대책 수립·추진

## 6 일자리대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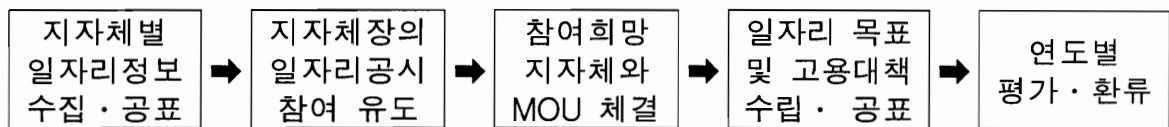
- ◇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운영(대통령 주재)을 통해 일자리 대책을 국정 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
-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뛰는 시스템 구축

###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국가고용전략회의)** 경제·교육·노동·산업·복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등 **거시적 접근**과 계층별·수요자별로 특화된 **미시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병행 추진
  -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운영, 매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주간(중순경)의 목요일을 원칙으로 **월 1회이상 개최**
- **(국가고용전략 수립)**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일(working)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정책영역을 포괄,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원칙과 전략적 목표 및 정책 등 제시(**10년 상반기 국가고용전략 선포**)

### □ 지역단위 고용정책 추진체계

- **(일자리 공시제 도입)** 자치단체장(기초·광역) 후보 공천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도록 하고,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유도
  - \* 당정협의를, 노사민정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역고용대책 수립)** 공시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대책 공동 수립
  - \* <지역고용대책의 내용> ①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특화산업육성 등 지역경제개발 대책 수립 ②관내에서 시행중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종합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③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사회적기업 등 틈새일자리 개발, ④지역밀착형 구인·구직개척 및 알선사업, ⑤그밖에 특화사업 등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 지역 고용사업 수행시 노사민정 협력채널로 활용

\* '09.12월 현재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71개 설치

- 지역고용심의회(舊 지방고용심의회)를 시·도에 설치된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등과 **통합 운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10.1.1. 시행)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확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별 예산배정 탄력적 조정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지역실업자훈련 등

- 일자리공시제 참여 지자체에 우대 지원하여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등 지역고용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에 응모하도록 유도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 참여기관간 컨소시엄 방식 참여를 유도하고 노사민정협의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사업개발·추진, 점검 등)

○ **(일자리 통계 인프라 구축)** 지자체별로(기초 및 광역)로 일자리 수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공표

▶ 시군구 단위 조사통계 확대 추진(통계청, 행안부, 시도 협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보완 추진(타 기관 DB 비교 분석 등)

**【참고】 지자체 일자리 통계 현황**

	가구조사 (지역주민 중 취업자수)	사업체조사 (지역내 일자리수)
조사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조사(시도별, 월 1회, 통계청)</li> <li>· 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별, 연 1회, 통계청)</li> <li>  * 특별시, 광역시 제외</li> <li>· 경기도 시군구 일자리 조사(분기 1회, 경기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도 및 시군구별, 연 1회, 통계청)</li> <li>·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시도별, 연2회, 노동부)</li> </ul>
행정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시도 및 시군구별, 분기 1회, 노동부)</li> </ul>

**붙임**

**노동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09.11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

	예 산			인 원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b>합 계</b>	<b>8,388,780</b>	<b>6,535,079</b>	<b>77.9</b>	<b>5,178,094</b>	<b>5,109,588</b>	<b>98.7</b>
<b>□ 일자리 창출</b>	<b>408,230</b>	<b>336,753</b>	<b>82.5</b>	<b>58,982</b>	<b>63,337</b>	<b>107.4</b>
사회적일자리 창출	233,013	184,444	79.2	25,477	29,154	114.4
정부지원청년인턴제	133,122	118,564	89.1	32,100	32,680	101.8
직업안정기관운영(고용서비스인턴)	35,017	28,364	81.0	1,160	1,258	108.4
취업애로계층직업진로개발지원	662	596	90.0	100	100	100.0
고용보험교육통계운영	6,416	4,785	74.6	145	145	100.0
<b>□ 일자리지키기, 나누기</b>	<b>575,614</b>	<b>319,133</b>	<b>55.4</b>	<b>287,847</b>	<b>291,608</b>	<b>101.3</b>
고용유지지원금	455,297	300,495	66.0	254,262	288,322	113.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3,696	6,335	171.4	1,085	1,475	135.9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지원	5,154	3,496	67.8	2,000	1,811	90.6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신규>	49,600	-	0.0	30,500	-	0.0
중소기업고용안정자금대부<신규>	61,867	8,807	14.2	-	-	0.0
<b>□ 고용촉진</b>	<b>391,449</b>	<b>336,393</b>	<b>85.9</b>	<b>158,521</b>	<b>154,340</b>	<b>97.4</b>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6,259	46,259	100.0	58,931	63,302	107.4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1,061	1,061	100.0	700	572	81.7
교대제전환지원	6,112	1,381	22.6	1,779	351	19.7
노사공동채취업센터 지원사업	11,251	9,218	81.9	6,767	15,799	233.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6,561	65,977	52.1	44,131	26,019	59.0
장애인고용장려금	125,830	139,735	111.1	27,576	34,572	125.4
전직지원장려금	2,800	2,529	90.3	1,043	1,366	131.0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41,170	54,733	132.9	7,624	7,674	100.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16,305	14,731	90.3	3,350	2,250	67.2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규>	3,000	-	0.0	620	-	0.0
취업장려수당<신규>	11,100	769	6.9	6,000	2,435	40.6

	예 산			인 원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b>□ 교육훈련</b>	<b>1,208,399</b>	<b>1,108,776</b>	<b>91.8</b>	<b>2,570,680</b>	<b>3,072,104</b>	<b>119.5</b>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91,056	418,257	107.0	1,808,764	2,352,803	130.1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지원	3,341	3,200	95.8	11,000	10,385	94.4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70,804	70,725	99.9	354,516	334,225	94.3
글로벌취업지원	20,274	16,212	80.0	5,125	4,184	81.6
기술,기능인력양성	48,765	45,969	94.3	22,055	18,385	83.4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855	855	100.0	390	366	93.8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33,458	33,458	100.0	3,500	3,533	100.9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76,942	74,349	96.6	10,510	16,967	161.4
새터민직업훈련	4,297	3,656	85.1	1,036	880	84.9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120,253	83,398	69.4	52,280	38,495	73.6
자치단체능력개발지원	7,005	7,005	100.0	5,313	7,518	141.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12,395	3,718	30.0	15,000	9,909	66.1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268,557	237,722	88.5	114,971	98,098	85.3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JUMP지원	15,000	10,491	69.9	50,000	50,853	101.7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37,934	27,467	72.4	54,000	66,389	122.9
직업훈련생계비대부	41,393	23,244	56.2	12,220	9,099	74.5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537	20,830	101.4	25,000	22,959	91.8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16,850	12,693	75.3	15,000	16,545	110.3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4,650	3,827	82.3	-	-	0.0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	4,000	2,802	70.1	-	-	0.0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향상프로그램	10,033	8,898	88.7	10,000	10,511	105.1
<b>□ 실업지원</b>	<b>5,795,088</b>	<b>4,425,242</b>	<b>76.4</b>	<b>2,101,910</b>	<b>1,528,038</b>	<b>72.7</b>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99,216	99,216	100.0	30,048	29,424	97.9
실업급여(구직·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 포함)	4,864,791	3,811,819	78.4	1,903,243	1,395,766	73.3
체당금지급	280,241	275,207	98.2	64,909	58,644	90.3
임금채불생계비대부	220,000	105,000	47.7	46,000	18,951	41.2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30,840	10,000	32.4	7,710	3,036	39.4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300,000	124,000	41.3	50,000	22,217	44.4
<b>□ 창업지원</b>	<b>10,000</b>	<b>8,782</b>	<b>87.8</b>	<b>154</b>	<b>161</b>	<b>104.5</b>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10,000	8,782	87.8	154	161	104.5

#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안)

## 1. 고용영향평가 개요

### □ 고용영향평가의 개념

-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 □ 도입배경

-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및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하여 고용창출을 고려한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
- 고용친화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유도하는 평가제도를 도입

### □ 고용영향평가의 유형

-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요청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
- **(선정평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

※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

### □ 고용영향평가 대상정책의 범위

-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 □ 고용영향평가 방법

- (평가 방법) I-O모형(단기분석), 일반균형모형(중기분석), 회귀분석 모형 등 다양한 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고용 및 일자리증감 분석
  - ※ 정량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병행
- (중점 평가사항)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등 산출
-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10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 정책별로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연구용역 추진
  - ※ 고용영향평가 시범사업 관련자의 지원 아래 평가대상 정책 소관 전문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추진

## □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채택

- (평가결과 채택절차) 평가 기초자료 작성(연구용역) → 평가결과 작성(고용영향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고용정책심의회) → 평가결과 송부(소관부처) → 개선방안 보고(소관부처→고용정책심의회)
  - \* 노동부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및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증감 수 및 질
  - 고용 및 일자리증감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제언

## □ 평가결과의 활용

- (정책 참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에 통보
  - 각 부처는 평가에 따른 정책제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고용정책 심의회에 보고
- (백서 발간) 매년 말 고용영향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백서 형태로 발간·배포

## 2. 고용영향평가 선정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 □ 우선 평가대상 정책 세부 선정기준

-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정책
  - 기업의 투자촉진, R&D 지원정책 등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지역개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
  - 교육·인적자원 개발 사업 등 양질의 노동을 공급하거나, 각종 복지정책 등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각종 세제(법인세, 소득세 등),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등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각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시행중인 정책을 우선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에 대하여도 평가
  - ※ 시행이 완료된 정책은 향후 동일한거나 유사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평가를 실시

### □ 평가 제외 정책

-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이 목적인 정책은 제외
  - 정책 자체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직접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가 가능하므로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적음
-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다른 평가체계를 갖춘 정책은 제외
  - 고용보험사업 기금에 의한 사업은 고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제도화된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

### □ 2010년도 선정평가 대상 정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